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8. 28.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 나. 발의자: 최인순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인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용역실명제 규정, 활용 규정,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정의(안 제2조)
-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7조)
- 용역실명제 규정의 신설(안 제12조)
- 용역과제의 활용 규정 신설(안 제13조)
- 용역결과물의 평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복잡한 정책 과제의 등장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연구 용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 목적과 연구 방식이 중복되는 무분별한 연구 용역 수행을 하거나, 위조·변조·표절 등의 연구 용역 부정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용역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신설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

#### ○ 주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정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과 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용역 실명제, 용역 결과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검토 결과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구(區)의 기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실명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결과물의 체계적 활용·공개·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과물 부실, 연구 결과 활용 저조, 예산 낭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안 제5조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개정 전에는 일정 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용역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하나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조사, 1천만원 이하 사업 등을 예외로 규정하여 실무 부담 완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짐.

- 안 제12조의 용역실명제 규정 관련하여 용역 추진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내부 행정 관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

를 공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제한 대상이 아님.

- 안 제14조에서는 용역 결과물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조항을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사유를 예외로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계약 이행을 부실, 부당, 부정하게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에 부합한다고 여겨짐.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인순의원 대표발의)

<p>의 번</p> <p>안 호</p>	<p>5 7 1</p>
-------------------------------	--------------

발의연월일: 2025. 8. .

발의자: 최인순·양송이·임현호  
이규선·정선희 의원  
(5인)

## 1.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용역실명제 규정, 활용 규정,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정의(안 제2조)
  - 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7조)
  - 라. 용역실명제 규정의 신설(안 제12조)
  - 마. 용역과제의 활용 규정 신설(안 제13조)
  - 바. 용역결과물의 평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용역 사업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 용역 사업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용역과제를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구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거나 또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3.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사업
4. 국·시비 보조사업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가 되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의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나.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다.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역과 제

관리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 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과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

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실명제) ① 구청장은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 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역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용역과제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 부서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물의 공개) 구청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용역결과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용역 결과물이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